

연사 1

## 친환경 축산물의 국제적 동향과 인증제도

권 동 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

# 친환경 축산물의 국제적 동향과 인증제도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
권 동 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 목 차

1. 친환경축산물 국제적 동향
2. 인증제도의 현황
3.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주요내용
4.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 1. 친환경축산물 국제적 동향

---

National  
Agricultural Products  
Quality Management  
Service

Q  
S

## 국제적 동향

-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, Well-being 분위기
  - 소득증대, 최근 식품사고에 따라 불안감 등
- 업계에서는 유기농 신제품 출시가 붐을 조성
  - 농산물, 축산물, 수입식품 등
- 유기 식품 수요 증가
  - 최근 유기식품 증가율 : 세계(-15%), 미국(20%), EU(8-10%), 그외(5-10%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# □ 코덱스 가이드라인의 유기농업개념

- 유기생산 체계는 사회적, 생태학적,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적의 농업생태계를 이룸
- 유기축산물 토양, 식물, 가축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형성
- 가축의 생리, 행동육구 존중에 기초를 두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사료와 사육공간제공, 복지와 질병을 예방하며 화학치료제의 사용을 삼가는 관리방법 구축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# □ 미국의 친환경 축산동향

-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
- 광우병, 구제역, 다이옥신 파동으로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증가
- 유기낙농품과 계란의 수요가 높고 육류 수요가 낮음
- 표기방법
- 100%Organic, Organic, Made with organic, Less than 50%Organic
- 유통형태는 소규모 직거래보다 대형유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- 유기축산농가에 대한 유기사료 자체 조달 및 수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□ 인증기준

- 국내산 및 수입산을 동일한 인증기준 적용
- 주정부 및 민간인증 기관에서 인증
- 유기축산물인증은 민간인증기관에서 자체기준 적용

□ 친환경축산직불제

-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설설치, 기술자문 등 지원
- 지원대상 : 총수입이 250만불 초과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가
- 지급한도 : 2002~2007 개인 또는 경영체당 최대 5억원
- 국가전체 예산중 60%이상 축산관련분야 할당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□ 일본의 친환경 축산동향

-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음(91%)
- 유기축산물 초기단계이며 유기사료 수급이 어려움(일반 사료의 2~3배 가격)
- 유기 배합사료는 대부분 미국으로 부터 수입하나 동남아 등 다각화
- 유기축산물 유통은 생산자 및 생산환경 추적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중
- 시장확대로 직거래, 전문유통, 농협 등 유통경로 다양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# □ 인증기준

- JAS법(2001.4)에 의한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시행
- 민간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유기축산기준 마련
- 정부는 인증기관 지정, 감독 및 관리담당

### □친환경축산직불제

-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
- 2000년부터 보조금지급
- 단지화된 경사지(1ha이상)
- 지원대상 : 향후 5년간 계속 영농종사 의무
- 지급한도 : 평지생산비 격차의 80%, 호당 1,000천엔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# □ EU의 친환경 축산동향

- 유기축산물에 대한 유통체계가 다양하며 다국적 유통업체에 집중현상을 보임
- EU 국가중 스웨덴, 덴마크, 오스트리아가 유기축산물 주요 생산국으로서 점유율이 높고 영국, 독일은 수입국으로 부상
- 덴마크는 유기축산물 4%, 우유 중 유기우유 비율 20%
- 오스트리아는 EU국가중 일반가축에서 유기가축으로 축종 전환 비율이 매우 높음
- 유기축산물 생산 급증으로 유기 사료생산 부족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□ 인증기준

- 민간기관에 의하여 유기축산물 인증
- 유기축산물 생산에 대한 규칙(1999)에 의한 규정준수
- 유기농산물 표시에 관한 규칙(1991)

□ 친환경축산직불제

- 비료, 농약감축, 유기농업, 친환경적 영농활동 농가 보조금 지급(1992도입)
- 참여면적 : EU 전체농가의 20%
- 지급한도 : 2000년 지원금액(ha당 45-95만원)

## 2. 인증제도의 현황



## 인증제도 추진경과

- 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('92.7)
- 축산물 품질인증제 실시('95.9)
- 환경농업육성법 제정('97.12.13)
-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(2001.1)
- 친환경축산물인증제 도입(2001.7)
  -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개정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인증제도의 개요

- 인증의 뜻
  -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
- 인증기관
  -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
- 인증대상
  - 제품의 품질 또는 경영체의 품질관리 System
- 평가방법
  - 인증기준 또는 표준과의 적합 여부를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평가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□ 표준화

- 제품의 종류, 형상, 품질, 생산방법, 용어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 하는 것

□ 국제적인 표준화기구

- ISO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
- 제품의 품질 또는 경영체의 품질관리 System

□ ISO

-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, 협력 증진
- 세계 공통의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
- 2004년 현재 세계 148개국 표준연구소의 Network
- 1947부터 현재까지 약 13,700종의 국제표준 발간

## 축산물 인증제도의 종류

□ 일반축산물

- 농산물품질관리법
-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, 품질인증(品) 마크

□ 친환경축산물

- 친환경농업육성법
- 유기축산물, 전환기유기축산물 등 친환경 마크

## 유기 인증 표시

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인증의 효과

### □ 생산자 측면

- 자기제품을 타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증진
-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
-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판매비용, 유통비용절감, 안정판매 등  
⇒ 소득증대 효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□ 유통업자 측면

- 인증품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어 통명거래 가능
  - 품질관리 용이, 유통비용 절감, 소비자 신뢰 제공
- ⇒ **영업이익 향상**

□ 소비자 측면

- 상품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
  -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, 어려운 항목에 대한 신뢰
- ⇒ **믿고 구매할 수 있음**

### 3.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주요내용

---

## 법적 근거

- 법 제17조(친환경농산물의 인증)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·용기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
- 법 제17조의 3(인증의 신청 및 심사)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, 심사의 절차·방법 등은 부령으로 정함
- 법 제17조의 5(부정행위의 금지)
  -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행위
  -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유사표시
  -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혼합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, 운반, 진열하는 행위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인증방법 및 절차

- **주요과정** : 신청 → 심사 → 결과통보 → 생산·출하과정  
조사 → 시판품조사
- **인증방법** : 서류, 도양·용수·사료 및 생산물 검사, 품질  
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 
⇒ 승인
- **사후관리** : 유통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 일치여부, 조사  
기준 위반농가 행정처분 또는 고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인증 신청

- ❖ 신청서 및 첨부서류(경영관련 자료)
- ❖ 신청서제출기관 : 농관원, 민간인증기관
- ❖ 민간인증기관 : 11개 기관('05. 9월)
  - 흙살림, 한농복구회, 양평친환경21, 한국유기농협회,  
녹색유기농, 한경대학, 울진친환경농업연구회, OCK,  
연암대학, 학사농장, 스페이스 등
- ❖ 신청기한 : 연중 신청
- ❖ 수수료 : 건당3만원/심사원, 출장비, 인증기관운영실비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

- 서류심사
  -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
- 농장심사
  - 농장경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여건의 적합여부
  - 토양, 용수, 사료 및 생산물 등에 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여부
- 토양·용수·사료 및 생산물 검사공인기관
  - 농촌진흥청, 농관원시험연구소, 지원 및 출장소, 농업기술원,  
농업기술센터 그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 
시험연구기관의 검사성적서(공인검사기관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구분

□ 유기축산물

□ 전환기유기축산물

- ☞ 최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, “무항생제축산물” 도입을 추진 중

##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

□ 일반원칙

- 초식가축: 목초지 접근용이, 기타가축: 노천 자연방사
- 전통적인 사양 체계인 경우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능
- 가축의 건강과 복지 유지
- 2년 이상 경영관련자료를 보관, 인증기관이 열람가능

□ 사육장조건

- 주변으로부터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가축복지를 위한 조건 구비
- 축사 및 방목조건 구비(축사밀도 등)

□ 자급사료 기반

-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(사료작물 : 소250평, 젖소399, 산양20)
-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사용 금지

□ 가축의 출처 및 입식

- 축종별 품종선택과 육종방법
- 가축 입식시 이유직후 또는 부화직후 입식

□ 전환기간

- 한·육우 : 입식후 12개월, 송아지 식육은 입식후 6개월
- 젖소 : 착유우 90일, 미경산우 6개월
- 산양 : 식육 생후6개월, 착유양 90일
- 돼지 : 생후 6개월
- 육계 : 부화후 7주, 삼계탕용(부화후 3~4주)
- 산란계 : 병아리 입추후 5개월
- 오리 : 식육(부화후 10주), 알(입추후 5개월)

□ 번식방법

- 농가의 여건에 적합한 품종사육
- 수정란이식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불가

□ 사료 및 영양관리

- 100% 유기사료 급여(2010까지 예외)
- 반추가축 : 85%이상, 비반추 : 80%이상
-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 : 합성질소, 항생제, 합성항균제,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



□ 운송, 도축 가공과정 등

- 운송은 스트레스와 고통의 최소화
- 도축은 HACCP 공장에서 실시
- 출하시 유해잔류물질 검사 후 출하

□ 축산분뇨 처리

- 분뇨를 자원화 하여 토양 및 식물과 순환관계 유지
- 분뇨는 완숙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

## 전환기유기축산물 인증기준

- 일반기준 : 1년 이상 경영관련자료
- 전환기간 : 전환기간 동안 사육, 초지에 접근이 용이  
반추가축, 방목지 등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진 비반추  
가축인 경우, 기간단축 가능
- 유기사료 : 반추 45%, 비반추 40% 이상 급여
  - 무농약농산물 및 부산물 : 반추 60%, 비반추 55%

## 인증 승인

### □ 인증여부 판단

- 심사원 :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제출
- 인증기관의장 : 시행규칙 별표3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
-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가능 여부 심의

### □ 인증승인

- 적합 : 별지 제9호 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발급
- 부적합 :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

##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

### □ 인증유효기간

-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

### □ 유효기간 연장

-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 
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 
경우 농관원에 제출

### □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여부 확인 후 인증서 교부

## 인증품의 표시

### □ 표시문자

-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 (농산물 일반명칭)로 표시하거나,
- 유기축산 또는 유기재배 등

### □ 표시방법

- 생산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인증번호, 품목, 산지,
- 생산년도, 무게 등을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
- 포장을 아니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 품에 스티커 부착,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

## 유기축산물 인증의 어려운 점

### □ 유기축산을 위한 사료생산 기반 부족

- 수입유기사료 의존도가 높아 순환적 유기농법에 의한 축산 지남
- 일반사료도 90% 이상 수입 의존

### □ 유기축산 전환시 농가접근 곤란

- 동물용 의약품 사용제한에 따른 질병발생 우려
- 사료작물재배시 생산성 저하

□ 민간인증기관 지정의 어려움

- 민간인증의 신뢰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
- 낮은 수수료로 인증기관 유지가 어려움
- 민간인증기관의 업무추진 능력이 미흡

□ 인증농가 관리의 어려움

- 사육지 분산, 소규모 농가가 많으며, 농가단위 인증 신청
- 영농법인을 인증하는 때에도 규모확대 어려움

## 4.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

## 유기축산물 인증 활성화

- 친환경축산물 인증여건 개선
  - 친환경농업육성법 인증기준 제도 보완
  - 유기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기배합사료 유통활성화
- 유기축산물의 안정적 정착유도
  -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와 연계한 순환농법
  - 유기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
- 유기축산물 생산 확대
  - 유기축산농가 발굴 및 인증추진
  -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도입으로 친환경 축산물 확대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인증업무의 단계적인 민간 위탁

-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적극 추진
  - 민간인증기관 : 농가심사, 승인 및 인증품 출하관리 등 업무 담당
  - 농관원 : 민간인증기관의 관리 및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전환
- 농축산물 민간인증기관지정 현황(2005. 9월)
  - 흡살림, 한농복구회, 양평친환경21, 국산공가공업협회, 한국유기농업협회, 한국유기농산품인증원(KOACS), 정농회, 부강테크, 녹색유기농, 한경대학, 조선대학, 울진친환경농업연구회, OCK, 연암대학, 학사농장, 스페이스 등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## 인증품 사후관리 강화

- 생산자 또는 영농법인 단위의 자율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
- 농가별로 생산계획량과 출하량, 출하실태 등을 조사
- 유통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  
⇒ 허위, 유사 표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

## 마무리

-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
  - ❖ 농업인은 친환경축산 실천의지, 인증기준의 준수
  - ❖ 인증기관은 엄격히 심사하여 인증 승인
  - ❖ 유통업체는 인증품 지위를 손상하지 않게 유통
  - ❖ 소비자는 인증품을 믿고 구매

환경보전적 입장에서 미흡하거나, 부족한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함.

**N**ational  
Agricultural Products  
**A** Quality Management  
Service  
**Q**  
**S**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)

감사합니다

---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